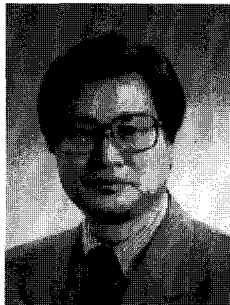


IMF 시대의 공정거래법의 개편방향



서 헌 제

중앙대 법대학장

1 시작하면서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무겁게 드리워진 비합리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숨가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에 뒤이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재벌그룹간

의 빅딜,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개혁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노동계는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책임에 따른 조정과정에서 근로자들만 모든 고통을 뒤집어쓴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또 국민들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데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하여는 이제까지 확대 재생산에만 길들여져 왔던 방만한 군살을 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시장기능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시급하고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정부주도의 합병, 퇴출, 재벌기업간의 빅딜 등은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통한 독점력의 강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자동차, 반도체, 유화, 철강 등의 산업에 대하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IMF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기본과제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는 각 산업 부문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이를 시장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상의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개편방향은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그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쟁법으로서의 성격 강화

현행 공정거래법은 크게 재벌규제를 위한 규정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벌규제법은 1986년 법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제한, 출자총액의 제한,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당내부거래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재벌총수에 의한 선단적인 경영, 문어발식 기업확장, 금융의 독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 정경유착 등 우리 경제의 모든 구조적인 모순이 재벌체제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재벌체제의 구축과 유지 확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지주회사,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벌규제법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이미 일반적인 경쟁법만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발전에 저해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의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시대에 들어와서도 공정거래법안에 이러한 재벌규제조항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그동안 재벌규제법의 운용성과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에의 경제력집중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면에서 그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둘째, 재벌규제조항은 소위 30대 재벌이라는 획일적인 범주를 정해놓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물론 규모가 크고 외형이 큰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경쟁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인 범위설정은 너무 규제위주의 관 주도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셋째, IMF 사태 이후 재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또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의 시행으로 재벌체제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중에는 우리 재벌기업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회사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는 재벌규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기업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소위 역차별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벌규제조항 중 지주회사금지 는 허용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자총액제한은 이미 지난 3월의 법 개정으로 철폐된 바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규제는 상호출자제한과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규제인데 이중에서 상호지급보증은 2000년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부당내부거래는 비단 30대 재벌 이외에도 모든 계열기업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규제하면 될 것이다. 상호출자제한도 공정거래법보다는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방대한 내용을 가진 재벌규제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분리하여 공

정거래법을 순수한 경쟁촉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적용영역의 확대 - 예외범위의 축소

현행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예외 분야가 너무나 많아 효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빠짐없이 적용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경쟁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예외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우선, 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법 제2조제1호,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법 제60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는 법 제58조, 무체재산권행사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법 제59조가 있으며 또 조항의 명문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용에서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법 제32조 이하의 국제계약에 관한 조항도 일종의 적용제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사업자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기준에 해당하는 12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추가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연탄제조업만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농림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과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서비스 등은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농수산업 등을 법적용의 제외분야로 정한 취지는 이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생산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조합을 통한 공동생산, 판매활동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자조합의 행위

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광업분야의 경우 농수산업과 같은 사업자의 영세성을 이유로 하는 생산과 유통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광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쇄석(레미콘 재료)생산판매업자간의 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적용 대상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자정의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의 범위에는 외국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2) 법령에 의한 적용제외

법 제58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의 자연독점성이나 공익성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쟁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사업활동규제를 통해 관할관청이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법 제6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사항을 각 법령에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령의 제정에 공정위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로 더이상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도 주관부처가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이 조항에 의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카르텔이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58개 법률에 66개의 적용제외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적용제의 카르텔중 상당 부분은 1998

년 OECD 권고안이 금지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핵심 카르텔(hardcore cartel)'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적용제의 카르텔에 관한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법규정상으로는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관련법을 일일이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부처간 협의체제라든가 법개정의 번잡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1997년도에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적용제외카르텔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제정이 되면 모든 카르텔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원화되기 때문에 적용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동행위의 인가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규모사업자 또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라든가 가격의 담합인상을 제외하고는 법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경제력이 약하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적용제외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용제외가 되는 조합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특히 서적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우리 나라의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서적상조합의 경우도 특별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다만 앞에서

도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기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이 심할뿐 아니라 생산이나 유통등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통한 공동판매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등 다른 선진국들도 농업생산자 조합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법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농·임·어업은 법 제2조제1호의 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만 이를 포괄적 정의규정을 바꿀 경우 제60조에서 이들의 생산자조합을 법 적용 제외분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무체재산권행사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은 발명자, 저작자 등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무한정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본질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각국에 있어서도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도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9조는 단순히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무체

재산권행사가 규제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59조를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부당한 무체재산권행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당한 무체재산권행사의 유형과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고시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국제계약인 무체재산권이용계약에 대하여 상세한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계약고시'의 상당부분은 제59조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5) 국제계약

법 제32조 이하의 국제계약규정은 외국사업자로부터 국내사업자가 기술이나 자본을 들여오거나 대리점계약등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 사후 심사요청을 하고, 심사결과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나 변경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같이 법 제59조를 개정하여 무체재산권행사의 규제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는 국제계약조항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또 국제계약조항이 협상력이 약한 국내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계약조항을 폐지하여 국제계약이든 국내계약이든 동일한 규정에 의해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계약조항은 다른 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과 달리 우월적 당사자인 외국사업자뿐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인 국내사업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법집행의 실제에서 보면 외국사업자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

고 오히려 계약의 상대방인 국내사업자에 대하여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법을 운용하는 결과 국제계약규정은 국내에 아무런 영업거점이 없어 범위반에 대해 별다른 규제수단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IMF 사태로 인해 국내기업의 협상력이 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계약조항을 서둘러 없애는 것이 타당할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계약조항은 이를 일반적인 공정거래조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적절한 시기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집행력의 강화

(1) 문제점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영역 확대와 함께 그 현실적인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위반사건을 적발하여 조사하고, 그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판정하며, 판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의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우 다양한 집행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의 경우를 보면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벌금부과, 시정조치,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부과, 위반행위의 私法상의 효력부인, 그리고 피해당사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집행수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들 집행수단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사건과는 달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私의 당사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등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집행력의 강화방향

1) 조사기능의 강화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피조사자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50조의 법문에는 현장출입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과연 피조사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현장출입권한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만일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公正委의 직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는 현장출입권한이 법조항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장출입권한은 단순히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에 대하여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장을 수색한다든지 문서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보호 :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는 피조사자로부터 문서나 자료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기업의 가격분석이나 기타 영업비밀에 속한 경우가 많아 자료의 외부유출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비밀자료의 제출을 꺼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비밀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쟁법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통보를 위하여도 비밀보호규정의 보완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법 제62조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완하여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의 요건과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형벌의 축소** :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으로 과징금의 부과와 형벌(벌금 등)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은 그 성격이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반면 형벌은 범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병과하는 데 법리상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자의 대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집행의 과잉이며 또 실제로 형벌부과는 그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효성도 적다고 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중 가격담합, 약탈적 덤핑과 같은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형벌을 부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U나 독일 등에서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형벌을 부과한다. 그리고 과징금도 궁극적으로는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임시중지명령제도** :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조치의 발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범위반사실을 즉시 중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아도 실익이 없거나 경쟁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가령 허위광고의 경우 광고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정공고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즉시 광고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허위광고의 계속으로 인해 소비자들이나 경쟁사

업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 법 제57조에 의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사전판단이 필요하고 둘째, 공정위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 용이하며 셋째,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고의 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선확정을 요구하게 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위반자의 위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위반행위의 지속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될 수 있다. 그 결과 시정조치의 선확정제도가 피해자의 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특성상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정조치의 선확정을 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 제57조제1항을 삭제하고,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시효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함으로써 私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6) **표시광고규제**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전자상거래라든가 통신판매 등과 같이 새로운 유통거래의 확산과 상품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보장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새로운 단행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등의 개선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규제를 받는 독과점사업자란 국내총공급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사 50%이상, 상위3사 75%인 사업자로서 공정위의 지정고시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고시제도는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대상인 기업들로서도 지정고시에 대비한 각종 자료 제출등이 큰 부담으로 되고 있다. 또 공정위가 행하는 대상품목별 매출액조사나 시장점유율 조사절차는 조사 개시부터 지정고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거의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된 시기와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한 2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 속도가 큰 경우에는 규제의 현실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대상사업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남용행위가 문제된 경우 그 시점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조사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른 수직제한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촉진적

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제 29조는 이를 당연위법시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전부 일반적 규정으로 전환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행위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6. 법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경제질서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을 그 적용영역 면에서나 집행력 면에서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강화 문제는 비단 우리의 관심사일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은행(IBRD)의 용자조건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법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개편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관합동위원회에는 주무부서인 공정위를 비롯하여 관련부처인 법무부, 재정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전경련, 중소기업대표와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룩한 단기개선과제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건의안을 마련하고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위 글에서 다룬 내용 중에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순전히 필자의 개인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